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입주자 모집공고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2021.01.20.부터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 지침 제20조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장 주택과 - 5105호(2021.01.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503-3일원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최고층수 29층 13개동 총 1,72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개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공급예정

[특별공급 859세대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72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72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344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51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120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됩니다.)

■ 공급대상

(단위 : 호, 세대)

주택형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계약면적(㎡) 계약면적(㎡)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 우선배정 세대수	일반공급 일반 세대수
일반공급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2020-001389	01	059.7737A	59A	39.6737	20.1264	1.7774	0.3436	36.1264	39.92	39	39	78	12	27	195	197	15	182
		02	059.8087B	59B	059.8087	024.7904	084.5911	2.7769	39.4321	126.8001	36.2707	54	5	11	2	27	99	2	97
		03	059.8827C	59C	059.8827	024.2290	084.1117	2.7807	39.4862	126.3786	36.1501	38	38	76	11	26	189	191	14
		04	075.9810A	75A	075.9810	024.0418	100.0228	3.5282	50.1013	153.6523	43.9516	110	11	11	22	3	8	55	55	4
		05	075.8036B	75B	075.8036	024.1079	099.9115	3.5199	50.0875	153.4090	43.8820	110	11	11	22	3	8	55	55	4
		06	084.9156A	84A	084.9156	027.3145	112.2301	3.9431	57.1576	172.1672	49.2474	49	49	98	15	34	245	244	19
		07	084.8501B	84B	084.8501	027.3668	112.2169	3.9401	55.9495	172.1065	49.2304	186	19	19	37	5	13	93	93	7
		합계										859	172	172	344	51	120	859	862	65

※ 주택형의 구분은 공급면적 기준이며, 전용면적 및 분양평형표기는 분양계획서 및 아파트 홈페이지(www.hillstate.co.kr)에 게재된 것만 유효하며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 가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정하는 조합원에 해당한 금액임.
- 본양가는 정확한 공시사용료로 사업에 참여 소요되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2021.3.1. 부터 공동주택 관리 법 제 23조 제 3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 되어 관리비 공개 시 관리비 항목에 따라 관리비 금액이 표시되어 공개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면적에는 각 주택형별 공용 및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형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전체 대지면적을 아파트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되었으며 등기 시 법령 및 관련 기준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2021.01.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5항 및 제 6항에 의거 주택형이 85㎡ 이하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의 경우 공급면적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임.
- 본 아파트는 2021.01.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5항 및 제 6항에 의거 주택형이 85㎡ 이하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의 경우 공급면적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73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에 의거 주택형 85㎡ 이하 주택 공급 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대상